

마.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(제14조제1항).

바.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(제21조제1항)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
고용노동부
장 이 재 갑

국 무 위 원
여성가족부
장 이 정 옥

● **법률 제16621호**

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촉진”을 “촉진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수립하는”을 “수립·변경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주요 시책

④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.

◇ **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,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국회에서 의결된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문 재 인 인

2019년 11월 26일

국 무 총 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이 정 옥
여성가족부
장 관

●법률 제16622호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5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

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3항의”를 “제4항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공개명령을 받은 자(이하 “공개대상자”라 한다)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.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「형법」 제37조(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.
- 2. 제1항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
- 3.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항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

제50조제4항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“제49조제3항”을 각각 “제49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2조제2항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6조제1항에 제2호의3·제6호의2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3.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 학교

6의2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

22.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

⑦ 제1항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 중인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, 그 취업 중인 자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.